

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2 선고 2018가단71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고F

변론 종결2018. 11. 8.

판결 선고2018. 1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8. 5. 3. 접수 제343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태형

별지